



## 2 국세

### (2) 확정신고

#### ●확정신고란

자영업, 농업, 자유업 등을 하는 사람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동안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,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,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단, 급여소득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

·급여의 연수입이 2,000 만엔을 넘은 경우

·급여를 2 곳 이상에서 받은 경우

등.

그리고 재류자격의 갱신이나 변경 때 등에 확정신고의 복사본이 필요할 때가 있으므로 보관해 둡시다.

\* 본국에 부양자가 있을 경우,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, 급여소득자라 하더라도 부양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부받도록 합시다.

[참고] 하마마쓰시 「카나루·하마마쓰」 URL

<https://www.city.hamamatsu.shizuoka.jp/hamaj/index.html> (일본어)

<https://www.city.hamamatsu.shizuoka.jp/hamapo/index.html> (포르투갈어)

<https://www.city.hamamatsu.shizuoka.jp/hamaeng/index.html> (영어)

#### ●확정신고에 필요한 것

필요한 서류	제출처	언제부터 언제까지	수수료
1 확정신고서(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) 2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것(원천징수표나 지불증명서) 3 신분증명서(체류카드, 특별영주자증명서) 4 부양공제에 필요한 것(본국에 있는 부양자의 출생증명서나 송금증명 등) 5 보험료공제에 필요한 것(보험의 공제증명서) 6 인감 또는 사인 등	세무서	그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	무료



